

레프리 풀 운영지침

제정 2019. 3.19.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사단법인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정관 제46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명칭은 레프리 풀(Referee Pool)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지침은 협회 레프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레프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회장이 위촉하는 레프리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레프리 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치프 레프리 6명 이하
2. 레프리 20명 이상 30명 이하(치프레프리 포함)

② 레프리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관 제34조 제1항에 따라 협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레프리가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레프리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지도자, 선수 및 심판) 출신자가 재적레프리 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레프리가 될 수 없다.
5. 여성이 재적레프리 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레프리 풀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상근부회장(전무이사) 또는 사무처장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촉) ① 치프레프리와 레프리는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레프리에 위촉되어 활동한 사람에게는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격) ① 레프리는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이 규정 제11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부합되는 자 중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예외로 한다.

1. 협회 레프리(전 경기위원) 10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 사람

2. R&A TARS 또는 협회 레벨 2 를 세미나(이하 “레벨2” 라 한다)를 수료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R&A TARS 또는 협회 레벨2를 이수하였더라도 매년 실시하는 이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임무지 배정은 80점 이상 받은 사람에 한 한다.

③ 협회 주최·주관 대회 수의 50% 이상 참가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④ 임기 내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레프리(심판) 아카데미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① 치프레프리는 배정받은 대회의 레프리를 대표하며, Inside Rope 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치프레프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협회에서 활동 경력 5년 이상의 레프리 중 추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레프리는 레프리 풀을 구성하고 레프리 풀에 출석하여 Inside Rope 내의 골프규칙 재정, 경기진행(경기속도 유지), 티 진행 등 원활한 경기진행을 주 역할로 한다.

제8조(활동기간) 레프리의 활동기간은 연간 협회 대회 일정을 기준으로 1년이다.

제9조(해촉) 회장은 레프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된다.

1. 레프리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대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레프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레프리가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6.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직계 존비속 결혼 또는 사망, 본인 결혼, 입원 치료 등) 없이 매년 협회가 배정한 대회에 30%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7.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본 레프리 풀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제10조(의무 및 품위) 레프리 풀의 레프리,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레프리 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언론 등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레프리는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

조 등 레프리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레프리는 협회 사업 및 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4. 협회의 레프리의 직위를 이용하여 협회 사업 외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지 못한다.
5. 대회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6. 레프리로서의 권위와 품위 및 도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7. 레프리는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8. 레프리는 협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9. 협회 대회 이외의 다른 대회의 레프리로 참가할 경우 지급된 유니폼을 착용할 수 없다.

제3장 레프리 등록 및 관리

제11조(등급) 레프리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제 레프리
 - 가. R&A TARS 90점 이상 합격자 중 영어 능통 자로 5년 이상 협회 레프리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제기구(IGF, R&A, USGA) 주관 대회에서 레프리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내 레프리
 - 가. 1급: R&A TARS 80점 이상 합격자 또는 레벨 2에서 90점 이상 합격하고 5년 이상 협회 레프리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2급: R&A TARS 70점 이상 합격자 또는 레벨 2에서 85점 이상으로 합격하고 5년 이상 협회 레프리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3급: R&A TARS 60점 이상 합격자 또는 레벨 2에서 80점 이상으로 합격하고 2년 이상 협회 레프리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제6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선발된 자

제12조(레프리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레프리 등록할 수 없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4.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제1항 제4호부터 제11호(제9호의 사유를 제외

한다)까지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5 현 직계비속(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이 골프선수로 당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

6. 골프선수를 레슨하고 있는 자(교사 및 교수 제외)

② 등록절차를 마친 레프리가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제13조(레프리 등록 및 활동) ① 레프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레프리 자격을 취득한 후 협회가 정한 절차 및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람만이 협회 레프리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레프리는 등록 변경 절차에 따라 레프리 등록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레프리 등록에 관한 사항) ① 협회는 등록 레프리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레프리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체육회 규정에 따라 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 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레프리 활동 실적발급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4장 레프리 양성 교육

제15조(교육) ① 레프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협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규 교육을 실시하고, 연간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협회가 별도로 정하며, 보수교육 시 현장 실습을 병행할 수 있다.

② 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자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레프리는 임기 내에 협회 및 대한체육회에서 지정하는 교육(체육회 주관 클린심판아카데미)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제16조(룰 세미나 운영) ① 레프리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함양, 인성 교육을 통해 레프리의 부정, 비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골프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② 룰 세미나 운영은 협회 주관으로 시행한다.

③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기본으로 편성하되, 레프리의 수준 및 교육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

2. 강사 구성은 골프라 전문가를 협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3. 교육 참가 레프리에 대하여 룰 세미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④ 협회는 교육이수자에 대해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5장 레프리 평가 및 배정

제17조(평가) ① 협회는 레프리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레프리에 등록하여 해당 연도 대회에 참가한 레프리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레프리 풀을 통해 레프리의 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매 대회마다 20개 이상의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조직위원회, 치프레프리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 평가를 포함한다.

④ 기본 평가세칙(별표 1, 별표 2)을 준용한다.

제18조(제척·회피 및 기피) ① 레프리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회 또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해 스스로 회피하거나 협회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③ 활동 기간 중이라도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척할 수 있다.

④ 대회 개시 전에 배정된 레프리를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레프리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협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대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의 친인척은 그 대회에 해당 선수 관련한 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배정) ① 레프리 배정은 협회에서 하되 대회별로 배정된 치프레프리와 협의하여 배정하고 대회조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국제대회, 오픈대회 등)

② 협회는 룰 세미나와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레프리를 우선 배정한다.

③ 위촉된 신입 레프리는 최초 1년간은 보(補)로 배정받아 근무할 수 있다.

제20조(판정) ① 레프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판 관련 규정과 레프리 지침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대회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 ② 레프리는 대회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 ③ 치프레프리는 대회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대회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고는 국제연맹 및 협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⑤ 협회는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시 비디오 재판독과 최소 3년 이상 영상보관의 의무를 경기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6 장 상벌 및 심판 매뉴얼

제21조(징계) ① 레프리가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레프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오심 누적 시 레프리 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레프리의 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① 레프리 평가 및 교육 우수 레프리에 대해서는 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우수 레프리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레프리 매뉴얼) 협회는 레프리 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3.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9. 3.19.)로부터 시행한다.

레 프 리 평 가 세 칙

1. 평가체계

구 분	등록 대회레프리	비 고
평가종류	역량평가	
평가대상	국제, 국내 대회레프리(1급, 2급 등)	
평가지표 (필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 - 대회 레프리배정 - 경기진행 - 대회 마무리 - 기타 	20개 이상 지표설정
	3개 역량 20개 항목	
평가활용	절대평가 후 상대 서열화	

2. 평가척도 : 총 100점 만점(역량별/항목별 기본평점 설정)

구 분	매우우수	우 수	충 족	미 흡	매우미흡
점수배분	91~100	81~90	71~80	61~70	60이하

- 매우우수 : 해당 역량의 기대수준을 뛰어넘어,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이며, 누구나 인정하는 롤모델로서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됨.
- 우 수 : 해당 역량의 기대수준을 일부 뛰어넘어, 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충 족 : 해당 역량의 기대수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어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지도나 도움이 필요 없음.
- 미 흡 : 해당 역량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어,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지도나 도움이 수시로 필요함.
- 매우미흡 : 해당 역량의 기대수준을 일부 충족시키고 있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약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도나 도움이 필요함.

3. 평가 점수

- 상대 서열화 시 등급별 점수에 따라 서열화
- 연간 참가한 대회 평가 점수의 총점을 참가대회 수로 나누어 평균점수를 산정하며 상기 평가점수표에 적용하여 수치화 한다.
(예 : 연간 참가대회 총점 880점, 총 참가대회 12개 대회→ $880 \div 12 = 73.3$ → “충족”)
- 기타
 - 중대한 오심 적용 때는 오픈대회 배정 금지 고려
 - 협회와 치프레프리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반하는 행위 시 배정 금지
 - 부정행위 용인 때는 레프리 퇴출

4. 평가권한 및 평가가중치

- 평가자
- 가맹단체 레프리 폴의 권한
 - 1차 : 평균표준편차조정법 설정 및 조정(개인별 편차 10% 이상 시)
 - 2차 : 등급별 순위 조정 및 확정

평가표

대회명 : _____

레프리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비 고
1 기본사항 평가 <협회 작성> (30점)	자격이수	(상) (중) (하)	R&A TARS, 레벨2
	교육이수	(상) (중) (하)	자체교육, 클린심판아카데미
	코스워크 참여	(상) (중) (하)	D-1 일정 참여
	경기자료 숙지	(상) (중) (하)	경기조건, 로칼룰 등 숙지
	복장, 카트 사용	(상) (중) (하)	지급물품 착용 여부
	기록지 제출	(상) (중) (하)	경기속도, 규칙판정지
	에티켓 및 태도	(상) (중) (하)	선수, 주최사, 골프장 등
	성실도	(상) (중) (하)	지각, 조퇴, 용품 반납 등
	외국어 능력	(상) (중) (하)	오픈대회만 적용
	협회 이미지 제고	(상) (중) (하)	주최사, 골프장(경기과,프론트,식당 등)
2 경기운영 (전문 수행능력) <치프레프리 작성> (30점)	규칙재정	(상) (중) (하)	기록지 제출, 오심
	경기속도 유지	(상) (중) (하)	경기속도 확인, 보고 및 유지
	성실도, 책임감	(상) (중) (하)	임무 완수 (재정, 경기속도)
	상황대응 (위기대처)	(상) (중) (하)	악천후, 부상, 긴급상황 대처
	의사결정	(상) (중) (하)	신속 정확한 판단
	조직융화 (협력)	(상) (중) (하)	팀원과의 협력
	설득력 (의사전달)	(상) (중) (하)	선수, 팀원에 대한 상황설명
	근무태도 (에티켓)	(상) (중) (하)	코스에서 근무태도
3 조직위원회 평가 (40점)	협회	(상) (중) (하)	주최사, 주관사, 골프장 의견 반영
	치프레프리	(상) (중) (하)	로버와 상의후 평가
총 점			

평가자 의견

로 버	
치프레프리	
협 회	

최종 평가